

교원 주거안정수당 지급에 관한 내규

제정 2000. 08. 11
개정 2009. 03. 01
개정 2010. 04. 01
개정 2018. 03. 01
개정 2023. 03. 01

1. 목 적

본 지침은 교원연봉제 운영규정 제21조의 2에 근거하여 교원 주거안정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택융자금 지원

- 가. 지원 대상 (삭제:2023.3.1.)
- 나. 지원내용 (삭제: 2023.3.1.)
- 다. 지원 우선순위 (삭제: 2018.3.1.)
- 라. 지원인원 (삭제: 2018.3.1.)
- 마. 지원횟수 (삭제:2023.3.1.)

3. 주거안정수당

가. 지급대상 (개정:2023.3.1.)

(1) 본교 교수아파트 이외의 곳(출퇴근 가능 거리)에 거주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다음 기준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로 한다.

- (가)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융자금을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(임차)한 자
- (나)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융자금을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(임차) 후 상환한 자
- (다)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융자금을 대출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거안정수

당 지원을 희망하는 자

(2) 단, 주택관리규정 제31조(입주자의 의무)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는 총장이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나. 지급기준 (개정: 2023.3.1.)

(1) 대출 상황에 따라 다음 금리 기준을 적용하여 매월 주거안정수당을 지급하며,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(가) 주택용자금 지원 한도 내 전액 대출: 개인별 금리

(나) 주택용자금 지원 한도 내 일부 대출: 대출을 실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조 나.

(1) (가)를 따르고, 대출을 미실행한 금액(지원한도-대출금)에 대해서는 정기에금금리로 지원

(다) 상환(전액 또는 일부): 정기에금금리

(라) 대출 미실행: 정기에금금리

(2) 지급 금리 산정 절차

(가) 정기에금금리: 본 대학 주거은행의 1년제 정기에금금리 (매년 3월 2일 전국은행연합회 고시 금리)

(나) 개인별 금리: 개인 신용도에 따른 실제 적용 금리

다. 지급 금리 기준에 따른 지급 방법 (개정: 2023.3.1.)

(1) 정기에금금리: 매월 급여 시 지급

(2) 개인별 금리: 매월 급여 시 지급

라. 지급기간

(1) 주거안정수당 지급기간은 2000.8.11 이전 부임한 전임교원은 최대 25년까지로 하며, 2000.8.12 이후 부임한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다.

(가) 2018.2.28 이전 주택용자금 신청 교원은 임용 시 명시된 주택지원기간까지 지급한다. 단, 주택지원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한하여 신축 교수아파트 입주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주거안정수당을 지급한다.

(나) 2018.3.1 이후 주택용자금 신청 교원은 재직기간 중 10년간 지급한다.

(2) 주거안정수당 지급대상자가 본 대학을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해당 월까지 지원하되, 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.

(가) 퇴직일이 해당 월 15일 이전인 경우: 해당 월까지 지급

(나) 퇴직일이 해당 월 16일 이후인 경우: 해당 월의 익월까지 지급

마. 주택용자금 대출 지원 기준 (신설: 2023.3.1.)

(1) 주택용자금 지원 한도

대학은 신청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주택용자금 최대 3억원(세대 당)까지의 이자를 주거안정수당으로 지원한다. 다만, 2023년 3월 1일 이전 주택용자금을 신청한 교원의 지원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다.

(가) ~ 2009.2.28: 최대 5천만원

(나) 2009.3.1~2018.2.28: 최대 1억원

(다) 2018.3.1~2023.2.28: 최대 2억원

(2) 주택용자금 대출 실행 금융기관

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(제1금융권)에서 실행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.

바. 신청 가능 횟수 (신설: 2023.3.1.)

주거안정수당 지원 신청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며, 부부교원인 경우에는 이중 지원하지 않는다. 단, 최초 신청 당시 주택용자금 지원 한도 내에서의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.

4. 주거안정수당 지원 신청 시기 및 절차 (개정: 2023.3.1.)

가. 신청 시기

구 분			신청 시기
대출	매입	기존주택구입	매매계약을 체결한 후

실행	자금	분양	1차 중도금 납부 후
		재개발	주택배정 후
	임차자금		임차계약을 체결한 후
대출 미실행			지원받고자 하는 당월 7일까지 신청

※ 단, 교수아파트에서 이주해 나갈 예정일 2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

※ 기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 이주코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.

나. 절차 : 별표2

다. 주거안정수당 지원 승인여부 판단기준

- ① 교수아파트 수급상황
- ② 연간 지원 대상 범위 (매년 초 공지)
- ③ 미등기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시는 불가. 단, 분양 또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가능
- ④ 주택매입 또는 임차지역은 출퇴근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
- ⑤ 기타 사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회통념상의 관례에 의거함

라. 구비(제출)서류

(1) 최초 신청 시

- ① 주거안정수당 지원 신청서 1부 (신청서 서식: 별표1)
- ② 주택 매입(임차) 계약서 사본 1부
- ③ 통장사본 1부
- ④ 주민등록등본 1부 (전입신고 후 제출 가능)
- ⑤ 부채증명서 1부

※ 추가 신청 시 ①②④⑤ 서류만 제출 가능

※ 대출 미실행 시 ①④ 서류만 제출 가능

- (2) 대출 상환 시 부채증명서 등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주택용자금 지원 한도 내 전액 또는 일부 대출을 받은 경우, 매달 7일까지 이자납입확인서 등 지난달 납부된 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.

5. 의무사항

- 가.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주택용자금 대출은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하며, 주택용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나. 대학이 지급하는 주거안정수당에 대하여 법적으로 과세되는 세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다. 제3호의 주거안정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개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신청서에 명기한 이주날짜보다 교수아파트에서 이주해 나가는 날짜가 늦어질 경우 일정액(지체일수동안 대학이 부담한 이자액의 150%)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.
- 라. 제3호의 주거안정수당을 지원받은 세대는 이후 교수아파트에 재입주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8.3.1 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3.3.1 부로 개정, 시행하되, 제3조 나. (1) (가) 또는 (나) 항목에 대하여 대출 받은 주택용자금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별 금리를 적용하며 이 경우 매달 7일까지 이자납입확인서 등 지난달 납부된 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.

<별표1>

주거안정수당 지원 신청서

교 무 팀	담당	팀장

최초신청 추가신청

소 속		성 명		직 번	
주 소					
교수아파트 퇴거예정일		본교임용일			
주택융자금 대출금액	금 원 (₩)				
주택융자금 구분	주택매입자금()		주택임차자금()		
대출 실행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 실행(예정)	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 미실행		

- ※ 교수아파트 퇴거예정일 2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
- ※ 주거안정수당을 지원받은 세대는 이후 교수아파트에 재입주 불가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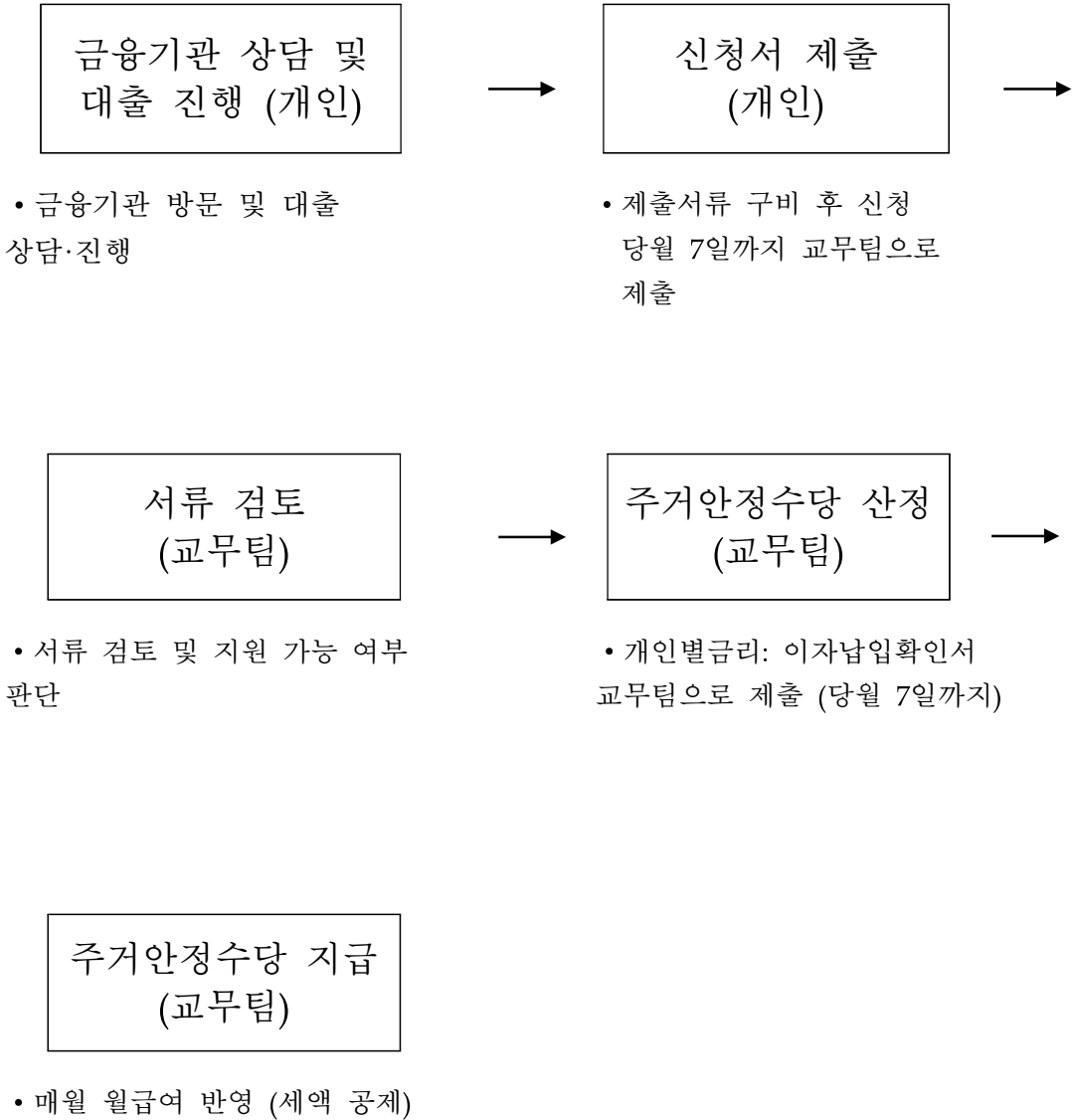
신청인 : (인)

- 첨부서류 :
1. 주택매입(임차) 계약서 사본 1부
 2.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
 3. 통장사본 1부
 4. 주민등록등본 1부
 5. 부채증명서 1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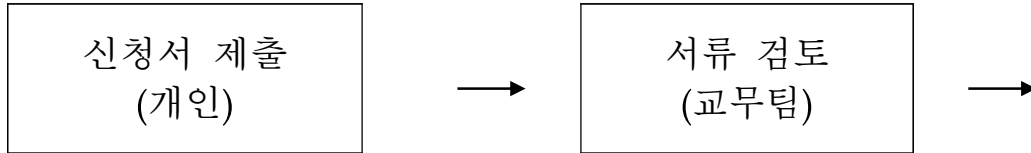
<별표 2>

주거안정수당 지원 절차

1) 대출 실행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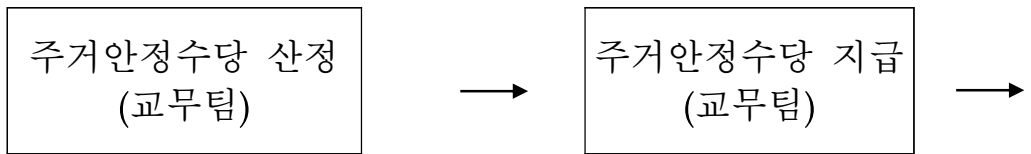


2) 대출 미실행/상환 시



- 제출서류 구비 후 신청 당월 7일까지 교무팀으로 제출
- 중도 상환 시 상환 내역 제출 (개인 → 교무팀)

- 서류 검토 및 지원 가능 여부 판단



- 정기에금금리: 교무팀 산출

- 매월 급여 시 지급